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83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정준호 · 이건태 · 채현일
임미애 · 염태영 · 한준호
이연희 · 손명수 · 문진석
임호선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골재는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 일부 탈·불법 행위의 성행 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 및 골재채취 기술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상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복지 실현,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골재는 주요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골재채취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건설공사에 골재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골재채취업자 등은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재의 지속적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검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고 더불어, 골재 품질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 연구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의 골재 수급 환경은 바다·하천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공급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자원을 활용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 골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암석자원의 수급체계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 등 건설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은 건설공기 등의 사유로 암석 자원을 사토 처리하거나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등 암석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에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원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환경훼손 예방 및 골재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제제효과 승계 방지 등 법령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재채취업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 기술의 보급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나. 현행 규정은 골재의 품질 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 등이 점검·조사 등을 거부·방해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8호의3 신설).
- 다. 골재채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라. 정기 품질검사의 시기·횟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을 위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2항, 제8항 신설).

마. 공공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인 토석에 대하여 예산절감, 국토 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골재용 토석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승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골재채취업자의 교육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외의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기준·철자 등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검사결과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8의3.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골재의 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골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매년 1회 이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
2.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34조의5제1항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골재용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용 토석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상속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발급받은자 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골재채취업자의 교육</u> <u>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u> <u>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골재채</u> <u>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u> <u>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u> <u>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6</u> <u>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u> <u>실시하는 윤리, 품질, 재해 및</u> <u>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u> <u>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u> <u>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u> <u>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u> <u>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u> <u>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골재채</u> <u>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u> <u>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u> <u>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u> <u>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u> <u>19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u> <u>등을 감경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른 교육대상자 외의 기능인</u>

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기준·철자 등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
 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
 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 8의2. (생략)

<신설>

9.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 · 점검 · 검사를 거
 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검

· 검사결과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
 한 경우

7.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골재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골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신 설></u>	⑦ <u>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생략)	⑧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⑦ (생략)
<신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
2.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

-----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골재용 토석이 효율적으로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용 토석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

<신 설>

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상속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